

2024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

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(24. 9. 2. ~ 10. 1.)을 운영합니다.

□ 대상: 관내(안양, 광명, 의왕, 군포) 고용보험 급여 및 지원금 대상자

□ 운영계획

○ 기간: 2024년 9월 2일 ~ 2024년 10월 1일(1개월간)

○ 유형: 자진신고 및 제보

○ 대상: 실업급여·모성보호 급여·고용장려금·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

○ 방법

- 온라인: 고용24홈페이지(work24.go.kr), 국민신문고

- 팩스: 자진신고서 또는 부정행위신고서 작성 후 팩스(0508-8230-0302)로 제출

- 방문: 안양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(☎ 031-463-0795)

※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, 메세타워 6층 부정수급조사팀

○ 신고 혜택

자진신고	제보
1. 추가징수액(최대 5배) 면제 2. 형사처벌 선처 요청* * (제외) 공모형,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, 부정수급액 등 감안하여 처벌이 필요한 경우 3.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 3분의 1까지 감경	1. 신고포상금 지급 - (실업급여, 모성보호급여) 부정수급액의 20%(연간 500만원 한도, 하한액 1만원) - (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) 부정수급액의 30%(연간 3,000만원 한도, 하한액 1만원) * 익명신고 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 미지급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집중운영기간 전담창구(☎ 031-463-079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